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. 4. 19 선고 2017가단3010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7. 4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59.49㎡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, 위 건물 (가)부분 59.49㎡에서 퇴거하고,
나. 33,464,750원 및 2017. 2. 1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78,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유석동

별지